

# 산업안전보건의 실태와 예방대책

소 장 권 도 용



인명재천이란 말이 있다.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운명에 의거 좌우되는 하늘의 뜻이라는 말이다.

이와는 달리 생각을 바꾸면 하는 일과 행동이 달라지며 나아가 인격과 운명이 달라진다는 말도 있다.

운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개척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 국민소득 100 불 미만의 가난을 이기기 위하여 60년대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수립 추진하였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200년이나 걸리던 공업화 사회를 우리는 불과 20년만에 이룩하였다고 자부할만큼 2,000 불 소득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량된 품종의 과실에 충해나 풍해가 많은 것과 같이 갑작스런 발전의 이면에는 많은 근로자들의 희생이 뒤따르게 되었다. 대형기계의 설비확장과 각종 화학재료의 사용으로 인

한 인체 유해물질의 증가는 사업장에 있어서의 작업환경을 오염시켜 산업재해와 직업병을 유발케하여 많은 근로자들의 사망·불구·폐질로 직장을 잃게 되고 있다.

작년 한해동안 당소 관내에서 11,000건의 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60여명이 사망하고 850명이 불구가 되었으며 300억원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온 것을 통계로 제시할 수 있다.

년간 3,000명의 기능인력을 양성하는 이 지역에서 숙련된 인력 1,000여명이 사망, 불구가 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은 인력수급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망·불구가 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의 불행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뿐더러 많은 산업 불구자가 우리사회에 배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사회적인 불안을 가속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같은 산업재해는 줄어들기보다 매년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므로 우리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

재해예방 사업을 펴기 위해서는 그 원인부터

분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선 크게 분류하여 근로자 자신의 부주의로 일어나는 재해가 50%, 시설미비 재해가 25%, 감독불충분으로 일어나는 재해가 20%, 여타 천재지변, 분류불능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원인분석 자료에 의한 예방활동은 첫째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작업을 하도록 주의 환기시키는 시정학교육을 계속해야 될 것이며,

둘째는 근로자가 접촉할 수 있는 위험한 기계설비를 안전장치하여 동력에 의해 재해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셋째는 꾸준한 현장감독으로 근로자의 위험작업을 사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한뜻이 되어 재해예방에 노력하면 98%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나, 노·사가 이를 중요시 하지 아니하고 감독관청의 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노·사 공히 자신들의 불행을 자초하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다.

당소 관내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이 4,439개소로서 근로자수는 약 30만명이며 여러산업중 특히 작업환경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제조업체는 3,061개로서 근로자 13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업무, 노동업무 및 안전보건업무등을 담당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은 노사분규, 진정사건 처리등 민원처리 업무에 보다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음은 물론 1인이 담당하고 있는 대상 사업장수가 많음으로 해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는 사실상 기대하는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온 실정이다.

그러나 올해부터 다시 부활된 안전·보건 전담자의 배치를 계기로 수적으로 보아서 기대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다소 부족할 것으로 생각되나 사명감을 가지고 산업보건 사업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달성토록 전력을 추구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당소의 산업보건에 대한 중점 사업으로서 날로 늘어나는 산업재해로 인한 인적·재정적 손실을 최대로 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산재보상 업무보다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방안으로서 예방 사업에 치중하도록 하여 불행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사업추진 방향을 설정 노력하고 있다.

첫째로 산업보건 업무가 어느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대규모 사업체에 비해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작업장 환경관리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영세 소규모 사업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당소로서는 사실상 이들 영세사업체의 실태 파악조차 완전히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중시하여 영세사업체의 실태파악에 주력토록 하였으며,

둘째로 이들 대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고 측정결과에 따른 개선대책의 마련은 물론 유해위험 작업부서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특수건강진단을 누락자가 없이 전원이 받도록 하여 직업병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함은 물론 이 환자에 대해서는 조기에 치료를 받도록 하여 건강한 생산인력을 확보토록 하고,

셋째로 작업조건의 개선, 사용기계 기구의 개선에 의한 작업능률의 극대화를 이룩하여 생산성 향상에 의한 대외 경쟁력을 높이도록 하며,

넷째로 재해 다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및 정기감독의 강화, 전문기관에 의한 안전보건 진단실시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시행토록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산업보건 사업을 원만히 추진, 달성하기 위한 대책으로

첫째 산업보건 사업은 정부주도에 의해서 보다는 사업주, 근로자가 스스로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소기의 목적을 보다 충실히 그리고 신속히 이룰수 있는 것이므로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보건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홍보·계몽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도록 할 것이며

둘째 산업현장에서 산업보건 사업을 실제 수행하여야 할 보건관리자와 건강관리보건담당자 및 산업위생 보건담당자가 형식적으로 선임만 되어 있을 뿐 실제 업무에서는 제외 내지는 기피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앞으로는 이들이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은 물론 업무수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토록 함으로써 이들 담당자들의 지위 향상에 노력할 것이고

셋째 사업장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도 학문적·기술적인 전문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수행의 차질을 없애기 위해 산업보건 전문기관과 항시 지원체제를 완벽히 하여 언제든지 요청시에는 적극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며

넷째로 이와 같은 일련의 사업이 전 사업장

에서 다같이 성취될 수 있도록 지도계몽은 물론 기피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강력한 행정적 제제를 가함으로써 현재 만연되어 있는 기피풍조를 일소토록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산업재해의 예방적 측면에서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의 산업안전보건 사업이 단기간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단계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여 나감으로써 빠른 시일내에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마음놓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모든 근로자가 자기가 속한 직장에 대해 평생 직장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화합된 속에서 맡은바 임무에 충실함으로써 복지사회 건설을 보다 앞당길 수 있는 밑거름이 되도록 꾸준한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돈을 잃는것은 조금 잃는것이고,  
 명예를 잃는것은 많이 잃는것이다.  
 그러나 건강을 잃는것은 전부를 잃는것이다.”